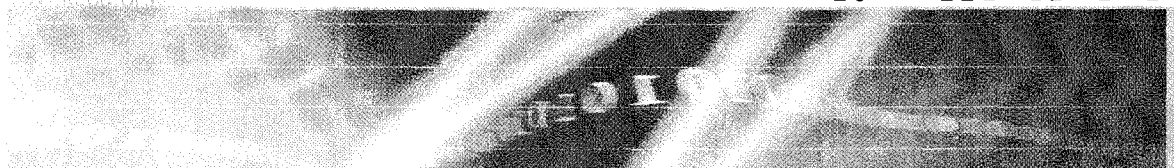

이번 특집은 환경관련법 위반업소를 저감시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반업체별 사례와 자기업체를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게재 하오니, 향후 위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보기술팀 제공

환경위해배출물질 저감을 위한 지침

1. 환경관련법 유형별 위반사례 (매일 1회이상 자체시설 대조확인)

※ 다음은 경기도에서 금년도(1월~10월) 시화 · 반월 공단내 공해배출업소 3,467개소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872개소의 환경관련법 위반 유형임.

○ 대기(수질)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

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설치허가를 득하고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조업하여야 함.

○ 관 련 법 : 대기(수질)환경보전법 제10조

○ 적발업체 : 183개 업소

○ 조치사항 : 183개 업소

⇒ 고발 및 사용중지 : 163개업소, 고발 및 폐쇄처분 : 20개업소)

○ 위반사례

본 업소는 000제조업체로서 2001년00월경부터 2003년00월00일 현재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(10.0m^3×2개소)과 건조시설(24.0m^3×1개소)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적정한 방지시설도 없이 설치 ·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함.

본 업소는 000제조업체로서 2000년 00월경부터 2003년 00월00일 현재까지 폐수배출시설인 습식연마시설(10마력×5대)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적정한 방지시설도 없이 설치 ·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함.

본 업소는 000제조업체로서 1999년 00월경부터 2003년00월00일 현재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가니로(1톤×3대)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적정한 방지시설도 없이 설치 ·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함.

○ 대기(수질)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

대기(수질)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배출시설을 가동 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,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

○ 관 련 법 : 대기(수질)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
○ 적발업체 : 85개 업소
○ 조치사항 : 85개 업소(고발 및 조업정지 : 85개업소)
○ 위반사례

본 업소는 000제조업체로서 2003년00월00일 점검당시 용해시설(5.5㎥×2대)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(세정식 집진시설 140㎥/분×1대)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면서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유출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.

본 업소는 000제조업체로서 2003년00월00일 점검당시 폐수배출시설인 안료제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(물리 · 화학적처리시설 140㎥/일)로 유입하지 않고 우수로를 통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면서 조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.

○ 대기(수질)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운영

대기(수질)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아니됨

○ 관 련 법 : 대기(수질)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
○ 적발업체 : 6개 업소
○ 조치사항 : 6개 업소(고발 및 조업정지 : 6개업소)
○ 위반사례

본 업소는 000제조업체로서 2003년00월00일 점검당시 도장시설(5.5㎥×1대)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치관을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유출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.

본 업소는 000제조업체로서 2003년00월00일 점검당시 폐수배출시설인 연마시설(10마력 4대)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(물리 · 화학적 처리시설 50㎥/일)로 유입하지 않고 우수로를 통하여 하천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고 조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.

○ 대기방지시설의 부식 · 마모, 훼손 · 방치

대기방지시설이 부식 · 마모, 훼손 · 방치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서는 아니됨.

○ 관 련 법 : 대기(수질)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
○ 적발업체 : 70개 업소
○ 조치사항 : 70개 업소(경고 및 과태료 : 70개업소)
○ 위반사례

본 업소는 000제조업체로서 2003년00월00일 점검당시 도장시설(5.5㎥×1대)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(여과에 의한 시설450㎥/분×1대)의 연결부분이 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는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.

본 업소는 000제조업체로서 2003년00월00일 점검당시 탈사시설(4.5㎥×1대)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(여과에 의한 시설 450㎥/분×1대)의 유입부분인 닥트시설이 훼손된 것을 방치하고 조업하는 것을 확인함.

○ 대기(수질)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

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도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거나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월 4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 보존하여야 함.

○ 관 련 법 : 대기(수질)환경보전법 제22조 제1항
○ 적발업체 : 53개 업소
○ 조치사항 : 53개 업소(고발 및 경고 : 53개업소)
○ 위반사례
본 업소는 000제조업체로서 2000년00월00일부터 점검당시까지 도금시설(250㎥/일)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(물리 · 화학적처리시설 300㎥/일)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조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.

○ 대기(수질)배출허용기준 초과

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조업하여야 함.

○ 관 련 법 : 대기(수질)환경보전법 제8조
○ 적발업체 : 74개 업소
○ 조치사항 : 74개 업소(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: 74개업소)
○ 위반사례
본 업소는 000제조업체로서 점검당시 용해시설(1.0㎥×2대)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처리하는 방지시설(여과집진시설 250㎥/분×1대)에 대하여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먼지(23.4mg/㎥)가 초과되어 개선명령 및 배출 부과금을 부과 처분함.
본 업소는 000제조업체로서 도금시설(3.4㎥×3대) 등을 가동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채수하여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인(T-N : 335.8mg/ℓ)이 초과되어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함.

○ 기타 위반사례

○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조업하던 중 추가로 시설을 설피하거나 폐쇄시에는 변경신고를 득하여야함.
관 련 법 : 대기(수질)환경보전법 제10조
적발업체 : 147개 업소(과태료 및 경고명령 : 147개 업소)

○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함.
관 련 법 : 대기(수질)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
적발업체 : 144개 업소
조치사항 : 144개 업소(과태료 및 경고명령 : 144개 업소)

○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가동개시 신고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함.
관 련 법 : 대기(수질)환경보전법 제 14조
적발업체 : 14개 업소
조치사항 : 14개 업소(고발 : 14개업소)

○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조업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
관 련 법 : 대기(수질)환경보전법 제10조
적발업체 : 3개 업소
조치사항 : 3개 업소(고발 및 선임명령 : 3개업소)

○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특정 및 일반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.
관 련 법 : 대기(수질)환경보전법 제 29조
적발업체 : 3개 업소
조치사항 : 3개업소(고발 및 제거조치명령 : 3개업소)

○ 사업자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명령(개선명령)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기간내에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.
관 련 법 : 수질환경보전법 제 15조제3항

적발업체 : 2개 업소
조치사항 : 2개 업소(조업정지명령 : 2개업소)

○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측정기기가 정상적을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.
관 련 법 :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
적발업체 : 2개 업소
조치사항 : 2개 업소(과태로 및 경고명령 : 2개업소)

○ 기타 유해화학물질 관리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장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적발함.
관 련 법 :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
적발업체 : 67개 업소
조치사항 : 67개 업소(고발, 과태료 및 경고명령 : 67개 업소)

○ 기타 폐기물부적정보관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됨.
관 련 법 : 폐기물관리법 제12조
적발업체 : 19개 업소
조치사항 : 19개 업소(관할관청으로 이첩)

2. 업체별 자가체크 리스트 (주 1회이상 환경관리인 직접 확인)

구분	자가점검사항	주요확인사항	점검결과
1.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항	배출시설 허가 · 신고 사항	◦ 배출시설 허가(변경허가) · 신고 (변경신고증) 확인	
	임의 증 · 신설 여부 사항	◦ 허가(신고)내용과 실제 시설설치 사항 확인비교	
	가동개사신고 여부	◦ 기동개사신고 후 조업 여부	
2. 배출시설 운영관리 (대기시설)	제조공정 확인사항	◦ 배출시설설치허가(신고)서류등에 의한 ◦ 공정흐름도,원료 사용량 등 제조공정 확인 ◦ 단위시설의 Vent, Safety Valve 등 관리상태 확인	
	정상운영 여부 확인	◦ 부식,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확인 ◦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배출장치-공기조절장치(댐퍼), ◦ 가지배출관(바이패스닥트)의 설치여부 확인 ◦ 가동중지인 배출사설 및 방지시설(원인, 기간 등)	
	보일러, 기타사항 확인	◦ 점화용 보조연료(가스,경유등)사용 여부 확인 ◦ 지역연료사용기준 준수여부(저황유 사용여부)확인 ◦ 연소물질(연료 등)의 종류 및 적정량 투입 확인 ◦ 고체연료사용승인 확인 ◦ 악취발생물질 무단소각 여부 확인	
3. 방지시설	설치여부 확인	◦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(방지시설 면제대상 제외) ◦ 허가(신고)시 설계된 도면(규모, 용량, 위치 등)과 일치여부 확인	
	정상운영 여부 확인	◦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(적산전력계등) ◦ 부대기계,기구류(계량기, 각종모타등)의 제성능 발휘여부 확인 ◦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과 방지시설 처리능력 비교확인	

구분	자가점검사항	주요확인사항	점검결과
3. 방지시설	정상운영 여부 확인	◦방지시설의 임의교체여부 확인 ◦약품의 적정량 투입 및 소모품의 정기교체(여과물 교체등)확인 ◦주기적 점검실시여부 확인 ◦가동 및 고장수리에 관한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 관계서류 확인 ◦공동방지시설에 허가 배출시설이외의 시설이 연결되었는지 확인 ◦적산전력계 설치확인 ◦배축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과 적산전력계의 가동시간 비교확인	
	오염물질 배출상태 확인	◦1차 육안으로 매연 및 먼지 배출 상태확인 ◦측정공의 위치 및 측정대 적정설치 여부 확인 ◦2차 시료채취 및 오염도 검사 ◦자가측정 결과 확인 ◦배출되는 오염물질 주요항목 측정 ◦총 배출구수/시료채취배출구 확인	
4. 방지시설 (폐수시설)	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사항	◦현장확인 ◦약품소모량, 전력사용량 및 기타 관계장부 등 비교검코 확인	
	비밀배출구 설치여부 확인사항	◦현장확인 ◦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비교 ◦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계도면 검토	
	방지시설 고장방치현장확인 (기기고장등)여부 확인사항	◦현장확인 ◦운영기록부 확인	
	처리약품의 정상적 투입 여부 확인사항	◦현장확인 ◦표준계산서에 의한 약품구입량, 재고량,톤장 투여량 및 소모량 비교검토 (허위기록여부) 확인	
	방지시설의 과부하 운영 여부 확인사항	◦총폐수배출량, 처리장 처리설계 용량 등 비교 검토	
	처리방식의 적정 여부	◦처리상태 확인	
	방지시설 가동 기록 유지 여부 확인사항	◦기록부 확인	
	최종 방류수 수질상태 확인사항	◦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확인	
5. 자가측정	자가측정 관련 확인사항	◦종별 이행횟수 확인 ◦검사의뢰 항목 누락 여부 확인	
6. 환경관리인 근무상태	정상근무확인	◦종별 자격기준 확인 ◦환경관계분야 전담부서 근무여부 확인(자격증 대여 불가)	
7. 신고 및 행정처분	신고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확인사항	◦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◦행정처분의 이행상태 확인 (경고,개선명령,사용중지명령,조업정지,폐쇄명령,허가취소 등) ◦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여부	